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0. 10. 26.(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안경위

- 제안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0. 10. 12.
- 회부일 : 2020. 10. 13. (의안번호 : 20 - 130)

2. 제안이유

- 택시운송사업 지원 정책(감염병 예방 등의 물품지원)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지원대상(안 제1조 ~ 제3조)
 -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 정의, 지원대상 규정
- 지원사업 및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운영(안제4조 ~ 제6조)
 - 지원사업 및 구민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규정
- 표창 및 시행규칙(안 제7조 ~ 제8조)
 -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구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한 성과가 있는 경우 표창 수여

4. 관계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된 내용이며, 택시운송사업 지원 정책(감염병 예방 등의 물품지원)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 정의,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사업 및 구민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임.
- 안 제7조에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구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한 성과가 있는 경우 표창 수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
- 검토의견으로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마포구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본 조례 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어떤 특정 단체에 지원함으로써 타운수업에 종사하는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의 지원 범위가 정당성에서 부합하는지, 그리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할 만한 택시운송회사 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